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779
----------	------

2024년 5월 3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4월 3일 서울특별시장
- 회부일자 : 2024년 4월 8일
- 상정일자 :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2024년 4월 29일 상정·의결 (수정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시민건강국장)

1. 제안이유

- 서울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먹거리 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확산을 위해 서울특별시 먹거리시민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등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장 직무대행 단서 신설 (안 제24조)
-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조문 구체화 (안 제32조)
- 위원의 수당 지급기준 구체화 (안 제33조)
- 위원회 존속기한을 2027년 9월 30일까지 연장 (안 제3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 (2024. 2. 1. ~ 2. 21.) 결과: 의견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김현경 (☎2133-4731)

Ⅲ.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주병준)

1 개정안의 취지

- 동 개정(안)은 서울시 먹거리 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확대·발전을 위하여 현재 설치·운영 중에 있는 ‘서울특별시 먹거리시민위원회’(이하 “먹거리위원회”)의 구성¹⁾ 관련 규정들을 명확히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그리고 아울러 동 먹거리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

2 개정안의 주요 내용 검토

가. 위원회 세부 구성 규정 정비 관련 (안 제24조, 제32조, 제33조)

1) 개정안의 내용

- 동 개정(안)은 “먹거리 위원회”의 “위원장 직무대행 단서(안 제24조)”를 신설하고, “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조문을 구체화(안 제32조)”하며, 이에 더해 “위원의 회의 관련 수당 지급 기준을 구체화(안 제33조)” 하고자 하는 것임.

〈 신 · 구 조문 대조표 〉

현 행	개 정 안
<p>제24조(위원장 등) ① ~ ③ (생략)</p> <p>④ 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u>대리한다</u>.</p>	<p>제24조(위원장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 ----- 때에는 ----- -----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3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위촉)</p>	<p>제32조(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p>

1)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위원의 수·자격·선임방법, 위원의 임기, 위원의 신분보장·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결격사유, 위원장의 직무와 그 대행, 존속기한 등의 순으로 규정한다. (출처: 법제처 2022년 자치법규 입안길라잡이 p.217)

현행	개정안
<p>회 등의 활동에 참여한 위원 및 제30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 -----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p>

2) 검토의견

○ 첫째, “위원장의 직무대행 단서 신설 (안 제24조)” 관련 검토

-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길라잡이(p.229)」에 따르면, “위원회 직무대행”의 규정에 대해 아래 [표]와 같이 규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동 개정(안) 제24조제4항 역시 이를 참고하여 개정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그 개정의 타당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됨.

법제처 매뉴얼 권고(안)	동 개정(안) 제24조(위원장 등)
<p>“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u>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u></p>	<p>④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u>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u></p>

- 다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는 조문의 경우는, 동 위원회가 “2인의 공동위원장 체제”임을 고려하여 “2인의 위원장이 협의하여 지명할 것인지” 또는 “당연적 위원장이 단독으로 지명할 것인지” 아니면 “위원회가 의결로 미리 지명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왜냐하면, 앞서 언급한 “**법제처의 권고(안)**”의 경우는 통상적으로 위원장이 “1인”인 “**단독위원장**”의 경우를 상정하여 작성된 사항이기 때문임.
- 따라서, “**단독위원장**”의 경우를 가정한 “**위원장 직무대행**” 조문이 아닌 “**공동위원장의 직무대행**” 관련 타 입법례를 참조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나아가 이를 통해 사전에 “**위원장 직무대행**” 관련 “**조문**”의 해석을 둘러싼 “**갈등 또는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사료됨.

〈공동위원장의 직무대행 입법례2〉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시행 2022. 4. 20.] [대통령령 제32589호, 2022. 4. 19., 일부개정]
제4조(공동위원장 등) ① 위원회의 <u>공동위원장 1명</u> 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되고, 다른 <u>공동위원장 1명</u> 은 민간위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② ~ ③ (생략)
④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u>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인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u> 이 공동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⑥ (생략)

○ 둘째,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조문 구체화 (안 제32조)” 관련 검토

-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관련 조문은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등의 객관성 확보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문임.
- 따라서, ‘서울시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보편적 기준**”이 되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9조(위원의 제척·기

2) 법제처 2022년 자치법규 입안길라잡이 P.229, 각주 167) 참조

피·회피)를 인용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고자 한 것은 그 입법취지와 목적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동 개정(안)이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를 인용하는 과정에서 ‘제8조의2제1항’만을 ‘한정적’으로 인용하고 ‘제8조의2제2항’을 인용에서 배제한 것은 ‘제8조의2제1항제6호’가 ‘제8조의2제2항’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왜냐하면, 동 개정(안)에 따라 ‘제8조의2제1항’만을 인용하고 ‘제8조의2제2항’을 배제할 경우,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제8조의2제1항 단서’ 조문에 따라 ‘제8조의2제1항제6호’에 대한 ‘예외 조문’인 ‘제8조의2제2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기 때문임.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① 시장 등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1.~5. (생략) >

6. 1년 단위(위촉일부터 기산(起算)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출석률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 7. (생략) >

② 제1항제6호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한다.

1. 위원의 1년 단위 참석대상 회의 개최 횟수가 1회인 경우

2. 잔여임기 1년 미만 등으로 1년 단위 출석률 적용이 어려운 경우

3. 천재지변, 응급상황, 그 밖에 위원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 그리고 이는 해석상 ‘동 위원회 위원의 1년 단위 출석률이 50 퍼센트 미만인 경우, 천재지변, 응급상황 등 어떠한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상관없이’ ‘필요적’으로 ‘해촉 사유’ 요건에 해당한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음.
- 따라서, ‘제8조의2제1항제6호’ 적용의 “예외적 사유”인 ‘제8조의2제2항’을 포함하고 있는 ‘제8조의2’ 조문 그 자체를 동 개정(안)에 인용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 셋째, “위원의 수당 지급기준 구체화 (안 제33조)”의 경우
 -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길라잡이(p.234)」에 따르면, “ ~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관련 조례에서 위원의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경우에는 위원회 관련 조례에 따라 수당 지급이 가능하므로 개별 위원회 조례에서 따로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음.
 - 따라서, 위원회 수당 관련 일반 조례인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의 내용을 인용한 동 조례는 ‘개별 조례’에서 따로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정한 것이 아니라 단지 ‘수당 등에 관한 일반 조례의 조문’을 ‘인용’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타당성이 존재한다고 사료됨.

나. 동 위원회의 ‘존속 기한’ 을 연장하는 사항 관련 (안 제35조)

1) 개정안의 내용

- 동 개정(안)은 서울시 먹거리 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확대·발전을 위하여 현재 설치·운영 중에 있는 ‘먹거리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3)에 따라 현행 ‘2024년 9월 21일’에서 ‘2027년 9월 30일’로 **약 3년 연장** 하고자 하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35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u>2024년 9월 21일까지</u> 로 한다.	제35조(위원회의 존속기한) ----- ----- <u>2027년 9월 30일</u> ----- -----.

2) 검토의견

- 동 ‘먹거리 위원회’는 ‘서울시 먹거리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등 전반적인 ‘서울시 먹거리 정책’ 과 관련하여 전문성 있는 ‘심의 및 자문’ 역할을 하고자 하는 위원회이며,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음.

주요기능 (심의·자문)

- 먹거리정책 방향 및 정책의 통합·조정, 기본계획 수립, 먹거리정책 지표 설정
- 시민사회, 산업계, 학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상호 협력
-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실현을 위한 환경조성 등

- 최근 **탕후루** 등 어린이 및 청소년의 당 과다 섭취문제, 무인식품판매점 확산에 따른 위생문제, 불법 수입식품 유통 판매 확산 등 **시시각각 변화하는 ‘식품 및 먹거리 정책환경’**을 고려할 때 그리고 **‘먹거리 안전’과 시민들의 ‘건강’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고려할 때,**

- 3) 제12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① 시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 또는 규칙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이하 “생략”)

- 동 위원회의 먹거리 관련 ‘정책 통합·조정 기능’, ‘유관 단체와의 상호 협력 기능’ 및 ‘환경조성 기능’은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그 필요성 존재한다고 사료됨.
- 다만, 과거 동 위원회는 그 필요성과 중요성과는 별개로 안전 및 회의수 대비 과도한 위원수(105명)와 분과위원회(7개분과) 구성으로 인해 시의회의 지적을 받은 바 있고,
- 이에 따라 동 위원회는 2023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개정을 통해 위원수와 분과위원회 구성 등이 전면 개편된 바 있음.
- 따라서, 향후 동 위원회의 ‘존속 기한’이 연장되어 본격적으로 운영될 때, 위원회의 본래 취지와 ’23년 3월 전면적 개편 목적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펴 볼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사료됨.

3 종합의견

○ 위원회 세부 구성 규정 정비 관련 (안 제24조, 제32조, 제33조)

- 첫째, “위원장의 직무대행 단서 신설 (안 제24조)”은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의 권고안을 반영한 것으로 그 타당성이 존재한다고 사료됨. 다만, 동 위원회는 ‘공동 위원장’ 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관련하여 “2인의 위원장이 협의하여 지명할 것인지” 아니면 “위원회가 의결로 지명할 것인지”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조문을 명확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 둘째,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조문 구체화 (안 제32조)”는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등의 객관성 확보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문임. 다만, 동 개정(안)이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를 인용하는 과정에서 ‘제8조의2제1항’만을 ‘한정적’으로 인용하고 ‘제8조의2제2항’을 인용에서 배제한 것은 ‘제8조의2제1항제6호’를 해석하는 데 있어 “필요적”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셋째, “위원의 수당 지급기준 구체화 (안 제33조)”의 경우는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길라잡이(p.234)」에 따라 검토하였을 때, ‘개별조례’에 ‘위원회 위원의 수당 관련 사항’을 개별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위원회 수당 조례’인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인용하였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존재한다고 사료됨.

○ 동 위원회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는 사항 관련 (안 제35조)

- 최근 탕후루 등 어린이 및 청소년의 당 과다 섭취문제, 무인식품판매점 확산에 따른 위생문제, 불법 수입식품 유통 판매 확산 등 시시각각 변화하는 ‘식품 및 먹거리 정책환경’을 고려할 때 그리고 ‘먹거리 안전’과 시민들의 ‘건강’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고려할 때,
- 동 ‘먹거리 위원회’는 ‘서울시 먹거리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등 전반적인 ‘서울시 먹거리 정책’과 관련하여 전문성 있는 ‘심의 및 자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 존재한다고 사료됨.

- 다만, 과거 동 위원회는 안전 및 회의수 대비 과도한 위원수(105명)와 분과위원회(7개분과) 구성으로 인해 시의회의 지적을 받은 바 있고 이에 따라 '23년 3월 전면 개편된 바 있음.

▶ 위원회수: 7개 분과위원회 -> 3개 분과위원회

▶ 위원수: 105명 이내 -> 30명 이내

- 따라서, 향후 동 위원회가 '존속 기한'이 연장되어 본격적으로 운영될 시, 위원회의 본래 취지와 '23년 3월 전면적 개편 목적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사료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수정안 요지

1. 수정이유

- 현행 ‘서울특별시 먹거리 위원회’가 2인의 공동위원장 체제임을 고려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는 위원’에 대한 ‘사전 지명권’을 ‘시민건강국장’의 권한으로 명확히 하고자 함.
- 동 개정(안) 제32조에서 ‘위원의 해촉’을 위해 인용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조문을 제8조의 2로 명확히 하여 ‘구체적인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위원의 해촉’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는 위원’에 대한 ‘사전 지명권’을 ‘시민건강국장’의 권한으로 명확히 함. (안 제24조제4항)
- 동 개정(안) 제32조에서 ‘위원의 해촉’을 위해 인용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조문을 제8조의2로 명확히 하고자함. (안 제32조)

VI.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779
----------	------------

제안년월일 : 2024년 4월 29일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1. 수정 이유

- 현행 '서울특별시 먹거리 위원회'가 2인의 공동위원장 체제임을 고려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는 위원'에 대한 '사전 지명권'을 '시민건강국장'의 권한으로 명확히 하고자 함.
- 동 개정(안) 제32조에서 '위원의 해촉'을 위해 인용하고 있는「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조문을 제8조의2로 명확히 하여 '구체적인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위원의 해촉'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는 위원'에 대한 '사전 지명권'을 '시민건강국장'의 권한으로 명확히 함. (안 제24조제4항)
- 동 개정(안) 제32조에서 '위원의 해촉'을 위해 인용하고 있는「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조문을 제8조의2로 명확히 하고자함. (안 제32조)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4조제4항 중 “위원장이 미리”를 “위원장 중 시민건강국장이 미리”로 한다.

안 제32조 중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제1항”을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서울특별시) (1779호)	수정(안) (보건복지위원회)
<p>제24조(위원장 등) ① ~ ③ (생략)</p> <p>④ 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p>	<p>제24조(위원장 등) ① ~ ③ (생략)</p> <p>④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u>위원장이 미리</u>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24조(위원장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u>위원장 중 시민건강국장이 미리</u>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3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위촉 해제·결격사유) ① 위원 중 심의·자문 등과 관련한 안전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전의 심의·자문 등에 대하여는 위원의</p>	<p>제32조(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u>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u>」 제8조의2제1항 및 제9조</p>	<p>제32조(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 ----- ----- 「<u>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u>」 제8조의2 -----</p>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자문 등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 등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에 따른다.

-----.

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충분한”을 “충분하며 안전한”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위촉직 위원”을 “위촉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되고”를 “맡고”로, “된다”를 “맡는다”로 한다.

제24조제4항 중 “모두”를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로, “때는”을 “때에는”으로, “대리한다”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 중 시민건강국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한다.

제26조제3항 본문 중 “서면으로 통보”를 “통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경우에는”을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으로 한다.

제28조제4항 중 “분기”를 “분기별”로, “할”을 “개최할”로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및 제9조에 따른다.

제33조 본문 중 “출석한 자에 대하여”를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34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35조 중 “2024년 9월 21일”을 “2027년 9월 30일”로 한다.

서울특별시조례 제6667호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안)
<p>제2조(기본이념) ①·② (생략)</p> <p>③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신선하고 영양이 <u>충분한</u> 먹거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먹거리체계를 만든다.</p> <p>④·⑤ (생략)</p> <p>제2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u>위촉직</u>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p> <p>② ~ ④ (생략)</p> <p>⑤ 위원회의 간사는 식품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p> <p>제24조(위원장 등) ① ~ ③ (생략)</p> <p>④ 위원장 <u>모두</u>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u>대리</u>한다.</p>	<p>제2조(기본이념)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u>충분하며 안전한</u> -----</p> <p>-----</p> <p>-----</p> <p>④·⑤ (현행과 같음)</p> <p>제23조(구성) ① -----</p> <p>-----</p> <p>-----</p> <p>----- <u>위촉위원</u> -----</p> <p>-----</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⑤ -----</p> <p>- <u>맡고</u>-----</p> <p>----- <u>맡는다.</u></p> <p>제24조(위원장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u>모두가 부득이한 사유</u> -----</p> <p><u>로</u> -----</p> <p>- <u>때에는</u> ----- <u>대</u></p> <p><u>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u></p>

제26조(위원회 회의 등) ①·② (생략)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을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위원회의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⑥ (생략)

제28조(분과위원회) ① ~ ③ (생략)

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기 1회로 하되, 분과위원장 또는 분과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분과위원회 회의를 할 수 있다.

제3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촉 해제·결격사유) ① 위원 중 심의·자문 등과 관련한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 등에 대하여는

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 중 시·민건강국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위원회 회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통보-----
---. -----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8조(분과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분기별 -----

----- 개최할 ---.

제32조(위원의 해촉, 제척·기피·

회피)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및 제9조에 따른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자문 등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 등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다.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33조(수당) 시장은 제26조 및 제28조 규정에 의한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 등의 활동에 참여한 위원 및 제30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5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4년 9월 21일까지로 한다.

제33조(수당) -----

--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

-----.

제34조(운영세칙) -----
----- 필요
한 -----
-----.

제35조(위원회의 존속기한) -----
----- 2027년 9월 30일-----
-----.